

세 법

총 평

안녕하세요...박문각 세법 대표강사 이수천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7일에 치러진 국가직 시험을 보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출제된 세법문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공부를 논리적으로 한 경우에는 90점 이상은 무난히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계산형의 문제가 3개 정도 출제되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급세무직을 공부하는 경우 세법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가장 어려운 과목일 수 있습니다. 강사와 교재선택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세법도 항상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 1. 국세징수법령상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
(단,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 ① 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② 원천징수한 법인세
 - ③ 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 ④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1. 【정답】 ①

- ①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 납세고지를 한 국세, ㉡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 원천징수한 국세, ㉣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기 전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세가 아니다.

- 문 2.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 ① 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③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 ④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는 산입한다.

2. 【정답】 ②

- ① 국세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공매는 불복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의 불복이 있는 경우 압류는 가능하지만, 공매는 할 수 없다.
- ③ 국세불복에 있어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적용된다. 따라서 국세불복에 대한 재조사결정에서도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할 수 없다.
- ④ 국세불복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장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 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성립 및 존속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채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가 국세 및 채납처분비를 채납하여야 한다.
 - ②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가 있는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납세자의 재산(양도담보재산 제외)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④ 양도담보재산이 납세자가 채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3. 【정답】 ④

- ④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도담보가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담보재산이 납세자가 채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양도담보설정일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 문 4.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가장 큰 금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4. 【정답】 ④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총평균법 중 큰 금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유가증권평가방법의 무신고시 “이동평균법”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문 5.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 ② 세무공무원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은 거래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만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정답】 ①

①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다.

- 문 6. A은행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됨) 1억 7천5백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류업을 하는 채무자 甲의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하였다. 첫 매각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비용과 채권은 다음과 같다. 甲의 주택매각대금이 3억 원일 경우 甲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 A은행이 해당 주택을 경매하는 데 든 비용 1천5백만 원
- 주택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 乙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 경매개시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甲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 甲이 종업원에게 변제하여야 할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1억 원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A은행의 채권 1억 7천5백만 원

- ① 0 원
- ② 1천만 원
- ③ 1천5백만 원
- ④ 2천만 원

6. 【정답】 ④

④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문에서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甲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甲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2,000만원이 된다.

순위	내용	금액
1	채납처분비	1,500만원
2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1,000만원 ② 최종 3개월임금과 재해보상금 1억원	1억 1,000만원
3	종합부동산세	2,000만원
4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1억 5,500만원
합계	주택의 매각대금 합계	3억원

- 문 7. 국세기본법령상 국제거래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②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④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 【정답】 ③

③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문 8.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세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 ② 소급과세의 금지
 - ③ 실질과세
 - ④ 납세의무의 승계

8. 【정답】 ②

- ②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개별)세법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개별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지문의 내용 중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개별세법에서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급과세의 금지”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문 9. 세무공무원 甲이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없는 A가 독촉장을 받은 상태(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음)로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A의 소유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
 ② 체납자 B의 퇴직금 총액(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총액)이 1천만 원일 경우 5백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제외한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③ 징수유예를 받은 C의 경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모두 불가능하다.
 ④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 원인 D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9. 【정답】 ②

- ①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甲은 체납자A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다.
 ③ 징수유예를 받은 C에 대해서 세무공무원 甲은 참가압류는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④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D에 대한 체납자료를 세무공무원 甲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체납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

문 10. 거주자 甲이 A회사와 판매수익의 귀속주체를 甲으로 하는 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A회사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A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A회사 명의로 판매하였다. 甲이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던 A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 중 무자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등에 따른 세금을 과세관청이 A회사가 아닌 甲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국세부과의 원칙은?

- ① 실질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

10. 【정답】 ①

- ① 거주자 甲이 A회사와 판매수익의 귀속주체를 甲으로 하는 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A회사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A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A회사 명의로 판매하였다. 甲이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던 A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 중 무자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등에 따른 세금을 과세관청이 A회사가 아닌 甲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실질과세의 원칙 중 귀속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문 11.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 ① 사업자가 제품을 1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그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500,000원을 할인하여 9,5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500,000원이다.
 ② 사업자가 제품을 1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제품의 품질이 주문한 수준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1,000,000원을 에누리하여 9,0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000,000원이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상당액 500,000원을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을 장기매출채권, 9,500,000원을 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500,000원이다.
 ④ 사업자가 취득 후 4개월 사용한 차량 A(취득원가 20,000,000원, 장부가액 14,000,000원, 시가 10,000,000원)를 유사 차량 B(시가 12,000,000원)와 교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차량 A의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다.

11. 【정답】 ③

- ③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할부판매로 인한 이자, 수수료,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료 등이 포함된 대가총액이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상당액 500,000원을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을 장기매출채권, 9,500,000원을 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다.

문 12. 내국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甲의 2019년도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에 따른 2019년도 총급여액은?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36,000,000원(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음)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5,000,000원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8년이며, 결산확정일은 2019년 3월 15일임
 ○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 × 12개월)
 - 식사대 외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음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甲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법인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 甲의 자녀(5세)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수당: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
 ○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000,000원

- ① 42,600,000원 ② 43,800,000원
 ③ 45,000,000원 ④ 50,000,000원

12. 【정답】 ③

③ 甲의 2019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근거	금액
(1)봉급		36,000,000원
(2)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8년이므로, 2018년 급여로 귀속되어야 한다.	-
(3)식사대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전액 급여로 귀속되어야 한다.	2,400,000원
(4)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귀속되어야 한다.	1,200,000원
(5)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므로,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귀속되어야 한다.	2,400,000원
(6)시간외근무수당	영업사원이므로 전액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	2,000,000원
(7)주택구입자금무상대여이익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	1,000,000원
합계		45,000,000원

문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음 항목은 거주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 ㄱ.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 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 ㄷ. 선급비용
-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① ㄷ,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13. 【정답】 ②

- ㄱ.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따른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ㄷ. 선급비용 : 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14.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③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 ④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4. 【정답】 ①

- 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본다. 그 이유는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1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상 해당 요건은 충족하고,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 감면 및 감가상각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①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연장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로서 개별 자산별로 300만 원 미만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③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 ④ 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5. 【정답】 ②

-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로서 개별 자산별로 300만 원 미만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한다. 이를 법인세법상 소액수선비의 손금인정특례라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 16. A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3년 전에 취득하고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던 B법인의 보통주 지분 20% 중 5%를 B법인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다. A법인이 해당 5% 보통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5천만 원이다. 해당 5% 보통주 지분의 양도가 A법인의 제20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단, A, B법인 모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및 소득공제와 차입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① 5천만 원 증가 ② 4천만 원 증가
③ 3천5백만 원 증가 ④ 2천5백만 원 증가

16. 【정답】 ③

③ A법인이 보유하는 B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증가분은 3,500만원이다. 그 구체적 계산과 정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의 계산 : 30%

【제2단계】 소득금액의 증가분 : (1억 - 5,000만원) × (1 - 0.3) = 3,500만원

문 17.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 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④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60일인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는 경우

17. 【정답】 ④

④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그러나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60일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문 18.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산업상·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용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8. 【정답】 ②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 이유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재화의 간주공급이 되기 때문이다.

문 1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령에 따른 해당 요건과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①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③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④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19. 【정답】 ①

①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문 20.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기타소득의 비과세,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의 면제·배제 등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①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②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이 대체된 것임)
③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④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20. 【정답】 ②

②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해약금 또는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